

농협인을 위한 ✕
청탁금지법
준수 가이드북



농협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준수 가이드북을 발간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정은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진정한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우리 농협에서도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법률 준수를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법상 금지행위와 처벌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다소간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준법지원부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농협 임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업무 적용 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본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농협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준수 가이드북'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의 위험에서 우리 임직원들을 보호하고,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여 보다 청렴한 농협 구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 9.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이 재 식

목 차

I. 법률 제정 배경 및 제정 취지	07
1. 제정 배경	09
2. 제정 취지	10
II. 법률 구성	11
III. 법률 주요 내용	15
1. 적용 대상	17
2. 부정청탁 금지	19
사례 01 14가지 직무 외의 청탁	
사례 02 상급자 지시에 따른 부정청탁 직무 처리	
3.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22
사례 03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개별적으로 청탁하는 경우	
4.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25
사례 04 동일한 부정청탁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7
6. 금품등 수수 금지	28
사례 05 출처가 동일한 다수 금품 제공	
사례 06 식사제공 시 제공금액 산정	

7.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31
사례 07 3만원 이내 음식물 제공이 연간 300만원 초과한 경우	
사례 08 가액 초과 비용을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	
사례 09 소액을 모아서 공직자등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사례 10 중앙회, 계열사 직원이 일부씩 부담하여 접대하는 경우	
사례 11 5만원 이내 음식물, 상품권 제공	
사례 12 공청회, 토론회 개최	
사례 13 특정사업 운영권 획득을 위한 토론회 개최	
사례 14 업무계획 발표 목적 기자 간담회 개최	
사례 15 홍보 목적 일부 특정 언론사 대상 간담회 실시	
사례 16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보좌관들과 정기모임에서 식사제공	
사례 17 외국 기관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	
8.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37
사례 18 허용 가액(10만원)을 초과한 경조사비 반환	
9.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39
사례 19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 20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 등에서 외부강의의 시 식비 등을 제공 받는 경우	
10. 양벌규정	42
사례 21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한 경우 제재	
11. 신고자등의 보호 · 보상	44

IV. 상황별 법률 준수 포인트	4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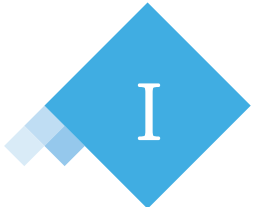
V. 농협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30문 30답	55
--------------------------------	----

01 ~ 09.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10 ~ 12. 예외적 허용가액 이내로 제공
13 ~ 14. 금지된 금품등 신고
15 ~ 16. 부정청탁 해당 여부
17 ~ 18. 금품등 가액 산정 기준
19 ~ 21. 직무관련성
22 ~ 26. 공직자등의 적용 범위
27 ~ 30. 제재기준 등

부록 :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71
--	----

2. 부정청탁 체크리스트	88
---------------------	----

3. 수수 금지 금품등 체크리스트	9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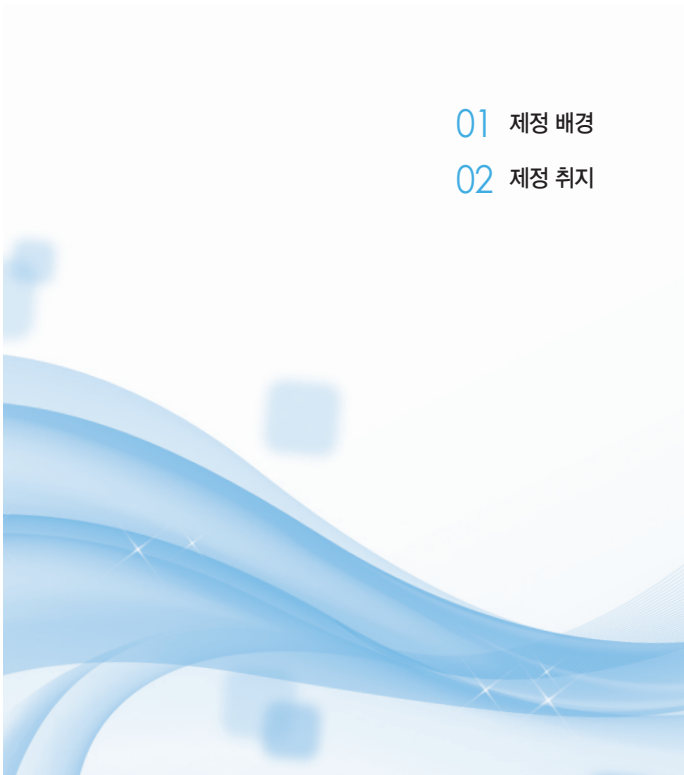


I

법률 제정 배경 및 제정 취지

01 제정 배경

02 제정 취지



I | 법률 제정 배경 및 제정 취지

1. 제정 배경

▶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관행 근절 필요

❖ 공공부문 부패로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일반국민 59.2%는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15년 권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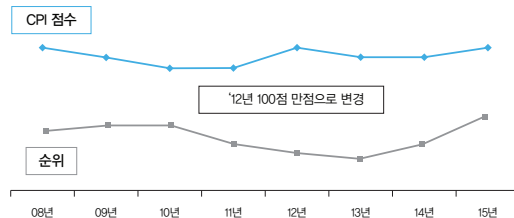
-'15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168개국 중 37위(56점)로 저조

▶ 부패 사각지대 해소 및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개선 필요

❖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가 처벌받지 않는 공직사회에 국민적 불신 증가

❖ 청탁·접대 문화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CPI) 변동 추이〉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 매년 국가별 부패지수 발표 NGO(93년 설립, 독일 베를린)
 •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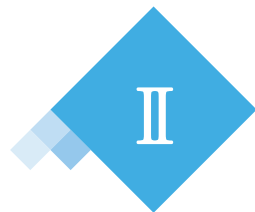
2. 제정 취지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 연고·온정주의로 인해 청탁을 받는 관행이 부정의 시작
 -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 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식을 통해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 ❖ 공직자들이 거래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 청탁금지법은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

▶ 공직자·공적 업무종사자의 보호

-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신고·반환한 공직자들을 면책



법률 구성

Ⅱ | 법률 구성

정의(2조)

- 적용 대상자 정의
- 금품등 정의

부정청탁 금지 (5조~7조)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금지

금품등 수수금지 (8조~9조)

- 공직자등은 금지된 금품등 수수 금지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 금지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 수수금액 제한 (10조)

- 직무 관련, 직위 등에 따라 요청받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초과 수령 금지
- 외부강의등 참석 시 사전 신고

양벌 규정(24조)

-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법인(기관)도 처벌

III

법률 주요 내용

- 01 적용 대상
- 02 부정청탁 금지
- 03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 04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 0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06 금품등 수수금지
- 07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 08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09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10 양벌규정
- 11 신고자등의 보호 · 보상

Ⅲ | 법률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적용 대상 기관

-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및 배우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및 배우자
- ⇒ 중앙회(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농협대학·농민신문사 임직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 파견 민간인
- 공무상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 위탁업무 수행 계열사, 농·축협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일반인

⇒ 중앙회, 계열사, 농·축협 전 임직원



Key point

- ①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임원, 계약직 직원도 공직자등에 해당
- ② 언론사의 경우 행정, 단순 노무 등 종사자도 공직자등에 해당
- ③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만 적용
- ④ '일반인'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모든 국민을 의미
 - 법적용 대상기관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 법 적용대상



농협인 준수 Tip

- ✓ 중앙회, 농민신문사, 농협대학 임직원 및 그 배우자는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법률 적용 대상
 -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시 적용 대상
- ✓ 계열사 및 농·축협 임직원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적용 대상
 - 단,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는 경우도 적용 대상
- ※ 계열사, 농·축협(임직원)의 정부 정책사업 위탁 수행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이 완료 되면 별도 문서 지도

2. 부정청탁 금지



개요

-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청탁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가 제재 대상
- ❖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

부정청탁 대상 직무(제5조제1항)

- ◆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 ◆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 ◆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직무
-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정당한 거래관행 위반)
-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 병역 관련 직무
-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Key point

- ① '부정청탁의 주체'인 '누구든지'는 자연인만 해당(법인 제외)
- ②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을 의미



사례 1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을 하는 경우?

☞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 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농협 자체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규율되어 위반 시 내부 징계 대상이 됨

- ③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를 포함

-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도 포함



사례 2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상급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임

- ④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형법」 등 일반 법령, 고시, 훈령, 상위 법령에 근거한 사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Key point

- ⑤ '정상적인 거래 관행'은 부정청탁이 없었을 경우의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의미
 - 특별한 사정없이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



농협인 준수 Tip

- ✓ 농협 임직원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
 - 특히, 제3자를 통한 인사청탁 절대 엄금



3.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 규정(7개)

부정청탁 예외사유(제5조제2항)

-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등
- ◆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진행상황·조치결과 확인·문의 등
-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
-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법령·제도 등에 대한 설명, 해석 요구
-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Key point

- ① '공개적'이란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



사례 3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개별적으로 만나서 청탁하는 경우?

- ☞ 공개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요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이상 그 방법은 불문함.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다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행위는 별개의 요구행위로 부정청탁이 성립할 수 있음



Key point

- ②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 또는 구성원 전체의 이익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
- ③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청탁 동기·목적·내용, 직무수행의 공정성, 청탁의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농협인 준수 Tip

- ✓ 모든 대외 업무는 "공개적"으로, "법령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진
- ✓ 공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당한 업무처리 요청 등이라는 근거를 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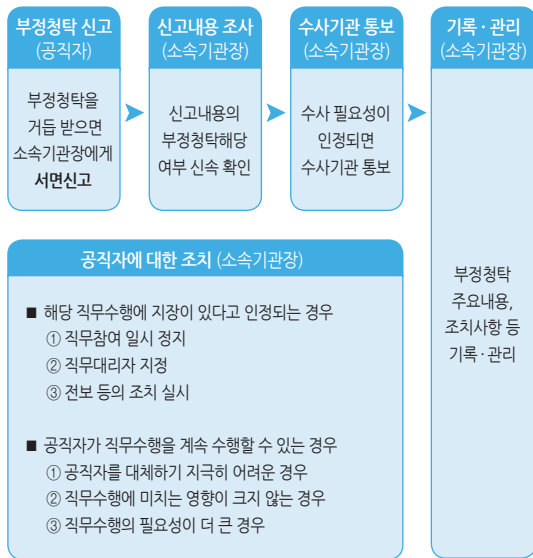


참고 1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판례

부정청탁 부정 사례	• 동협조합장의 예금유치를 위한 청탁은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79.6.12. 선고 79도708 판결) •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 선처를 청탁하는 것은 사회상규로 허용된다고 판단 (대법원 82.9.28. 선고 82도1656 판결)
부정청탁 인정 사례	• 방송 프로듀서에게 담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 (91.1.15. 선고 90도2257 판결) • 위탁수급사원 추천업무 담당자에게 자기를 위탁수급사원으로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 (89.12.12. 선고 89도495 판결) • 물품구매계약 담당자에게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주고 편의를 봐 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 (90.8.10. 선고 90도665 판결) •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감정물의 감정평가액을 낮추어 평가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 (82.7.13. 선고 82도925 판결) • 현장감독업무 담당자에게 공사사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 (82.7.13. 선고 82도925 판결)

4. 부정청탁의 처리 절차

〈부정청탁 신고처리 절차(제7조)〉



Key point

- ① '동일한 부정청탁'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들을 기준'으로 판단
-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신고 의무 발생)



Key point



사례 4

임직원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도 동일)

② '부정청탁의 공개여부'는 소속기관장이 결정하며,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이 아님



농협인 준수 Tip

- ✓ 청탁을 받았을 때는 일단 법령 위반 사항은 처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표시
- ✓ 법령위반 여부 등이 불명확할 경우
 - 특히 시비의 가능성이 있는지, 부당한 이익 제공의 가능성이 있는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거절
- ✓ 거절했음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서면으로 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준법지원부로 제출 또는 준법감시시스템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
- ✓ 부정청탁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부록2 부정청탁 체크리스트' 활용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행위주체	유형	제재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이 아닌 자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Key point

- ① 공직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함
- ② 과태료는 부과 받을 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부과결정(소속기관장이 관할 법원에 통지)



농협인 준수 Tip

- ✓ 농협 임직원이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할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내부 규정에 의해 징계 대상이 됨

6. 금품등 수수 금지

▶ 개요

❖ 공직자들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금지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제재

❖ 공직자들의 배우자는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들의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공직자들을 제재



Key point

① '동일인 여부'는 '실제 제공자(출처)'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법인과 법인소속 임직원의 병행 금품 제공 시 제공목적, 금품의 실질적 출처, 제공 경위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 여부 판단



사례5

농협중앙회가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해당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교수가 선정된 사실을 알고 중앙회 임원은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보내고, 직원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또 다른 직원은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경우?

☞ 양주, 상품권, 식사 등의 출처는 중앙회이므로 평가위원인 교수는 동일인(법인도 포함)으로부터 모두 11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이 됨. 제공자는 각 각 과태료 부과 대상(공동 제공 행위인 경우 형사 처벌 대상), 교수는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형사처벌 대상임



Key point

② '1회'는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면 포괄하여 1회에 해당

③ '직무와 관련하여'에서 직무란 '그 자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와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

④ '금품등'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

-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수익권 등
- (향응 편의 제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 성(性)매매, 장학생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등도 포함

⑤ '금품등의 가액'은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



사례6

직무 관련된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여러 음식을 시켜서 총 비용이 10만원이 나온 경우?

☞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공자 포함 2명인 경우 공무원에게 5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 됨

* 공직자들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공직자들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합산함

⑥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를 금지

위반 시 제재

행위	제재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원 또는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명목 여하 불문)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 직무와 관련하여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여부 불문)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경우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농협인 준수 Tip

- ✓ 농협 임직원 및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과 허용가액 이상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 직무 관련자와의 식대는 'Dutch Pay' 생활화
 - 특히, 공직자등과의 3만원 초과 식대는 반드시 'Dutch Pay'

7.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

- ◆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나 상급 공직자들이 제공하는 금품등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
-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Key point

-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들이 제공하는 금품등
 - 동일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들 사이에서만 성립 가능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합산하여 10만원 이내
 - *경조사의 범위 :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됨.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합산하여 5만원 이내
 - 가액범위 이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제재 대상

Key point



사례 7

특정 공직자들에게 3만원 이내 음식물을 제공한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등의 목적에 맞는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제공하는 경우 횡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정도로 자주 제공한 경우는 일반적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등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사례 8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들이 결제한 경우?

-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지불한 경우 위반이 아님



사례 9

○○농협 직원들은 ○○군청의 A과장과 평소 업무와 관련해 자주 접촉하며 친분이 있는 사이로 A과장 생일 선물로 2만원씩 모아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한 경우?

- ☞ ○○농협 직원들이 사고 목적으로 A과장에게 선물을 제공하였고, 각자 2만 원씩 부담한 경우라도 생일 선물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돈을 모아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공동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선물 허용가액 5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예외 사유 적용이 어려움



사례 10

농협중앙회 및 4개의 계열사 홍보 담당자와 농협 부문 기자 1명이 원활한 업무 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6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10만원)하였고,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담당자들이 각각 12만원씩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 ☞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담당자 각자는 기자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기자도 동일하게 제재

Key point



사례 11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상품권을 제공한다면?

- ☞ 제공자가 함께 하는 식사 외의 음식물, 상품권은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제공이 가능함. 다만,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③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정당한 권원'에는 '증여'가 제외되고, 권원의 존재 여부와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④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⑤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제공'은 단체를 대표하여 제공해야 함 (개인적 제공 제외)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는 친분관계의 원인,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학교,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여러한 처지'란 질병·재난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⑥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공식적인 행사'는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
- '통상적인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
- '일률적으로'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참석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 (다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이 다를 경우 그에 따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

Key point



사례 12

정책 형성 및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 의견수렴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 ⇒ 정책 형성 및 시행을 위한 일반적인 의견 수렴의 목적이 인정되고, 행사 목적 및 내용과 부합하는 참석 대상 등이 인정되어 공식행사로 볼 수 있음



사례 13

특정 사업 운영권 획득을 위해 관련 주무 부처 공무원들을 위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 ⇒ 주최 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점, 참석 대상을 극히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움



사례 14

연초 업무계획 발표를 위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

- ⇒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의 개방성 등이 인정되어 공식행사로 볼 수 있음



사례 15

홍보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

- ⇒ 특정된 소수의 언론사만 참석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참석 대상을 한정할 점,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서 농업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식 행사로 인정이 어려움



사례 16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농업 임직원들이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보좌관들과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가지면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 ⇒ 사적으로 갖는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

Key point

⑦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금품등

- '불특정 다수'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기념품, 홍보용품'은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⑧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정직자금법」의 후원금(단, 대가성 있는 경우 뇌물죄 인정), 「영유아보육법」의 양육수당, 보육수당 등을 의미
- '다른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 기관의 사규 등 내부기준에서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등을 의미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



사례 17

외국 기관 고위직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등) 주고 받는 선물의 경우?

- ⇒ 국내 공직자 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 금지법이 적용되나, 외국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8호(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선물은 신고 및 인도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 수수 가능

농협인 준수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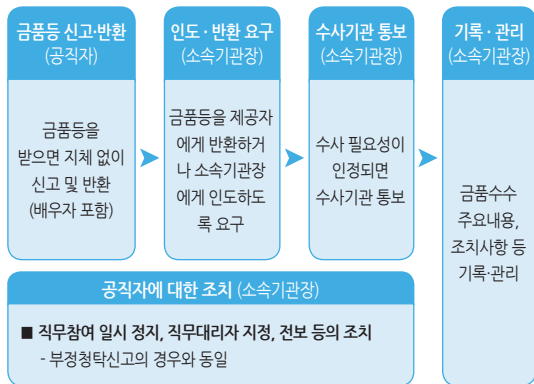
- ✓ 허용 가액 이내라 할지라도 제공 목적(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등)을 벗어난 경우는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
- ✓ 업무관련 모든 행사는 '행사내용과 비용지출'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 ✓ 직무 관련자와 업무 협의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를 활용

참고 2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과 뇌물의 구별 판례

뇌물 인정 사례	• 감독대상 공사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녀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500,000원을 뇌물로 판단 (대법원 83.7.12. 선고 83누262 판결) • 주차관리원 채용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알선 명목으로 받은 200,000원을 뇌물로 판단 (대법원 96.6.14. 선고 96도865판결) • 은행지점장이 제공받은 83,500원을 제공자와의 관계, 제공받은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뇌물로 판단 (96.12.6. 선고 96도144 판결) •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150,000원을 뇌물로 판단 (99.10.29. 선고 99고합504 판결)
뇌물 부정 사례	• 오랜 친구로부터 받은 45,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에 대해 제공자와의 관계, 만날 때의 복장,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사교적 의례에 해당한다고 판단 (07.1.25. 선고 2006도37 판결) • 공무원이 제공받은 31,500원의 식사에 대해 제공자와의 관계, 제공자와 식사비용을 번갈아가면서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교의례에 해당한다고 판단 (08.2.29. 선고 2007도10722 판결)

8.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처리 절차(제7조)〉



Key point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공직자들이 '지체 없이' 신고·반환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



사례 18 허용 가액(10만원)을 초과하여 20만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기준 초과 부분이 아니라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전액을 반환해야 함

*목적 요건(일정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과 가액기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수수한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농협인준수 Tip

- ✓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
- ✓ 신고서를 작성하여 준법지원부로 제출(금품등은 제공자에게 반환)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취지, 이유, 제공자 인적사항,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 기재(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를 함께 제출)
- ✓ 받은 금품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준법지원부로 인도 가능
- ✓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부록3 수수 금지 금품등 체크리스트' 참조

9.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개요

- ❖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의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의 수수를 금지 (농협중앙회 임직원 해당)
 -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
 -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 ❖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을 수수하고 신고·반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500만원 이하)



Key point

- ① 규율대상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② '외부강의등'은 대가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제외)
- ③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시행령 별표2)을 초과한 사례금 수령 불가
 - 요청기관(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상 및 내용이 동일하면 개별건으로 인정 불가(개별건으로 사례금 수수하지 않도록 유의)



사례19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 근무시간인지 불문하고 신고 대상임





Key point



사례 20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 등에 참가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게되어 식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

- ☞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과 별도로 제8조의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국가·지방공무원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장관급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	40	30	20

■ 공직유관단체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	30	20

-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함 (예 : 직원이 3시간 강의 시 상한액 30만원)

■ 교사, 언론인

강의	1시간당 100만원
예외	1회 100만원(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등)
기고	1건 100만원

-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외부강의등 참석 관련 출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 되는 교통비 등은 별도



농협인 준수 Tip

- ✓ 중앙회 임직원 : 외부강의등 참석 시 신고 및 사례금 수령기준 준수

- 신고방법 : 준법감시시스템 > 윤리경영 > 외부강의/회의 신고시스템

- ✓ 계열사, 농·축협 임직원

- 공직자등에 대한 외부강의등 요청 사례금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한액 이내로 지급

10. 양벌규정

» 개요

-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제재 (해당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 단,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 불가 (국민권익위원회)



Key point

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를 통해 확정



사례 21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제재사항은

- ☞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제3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이므로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법인도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농협인 준수 Tip

- ✓ 중앙회, 계열사, 농·축협 임직원은 중앙회 및 소속기관의 윤리경영·준법감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행동강령, 복무규정 등 제규정을 반드시 준수
 - 중앙회, 계열사, 농·축협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행동강령 운영,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준법감시(점검)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
- ✓ 면책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
 -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실시 여부
 - 임직원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하였는지 여부
 -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시정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법인의 대응



11.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 개요

- ❖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는 모두 보호 대상
- ❖ 신고자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보상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각각 준용
 - 비밀보장, 신분보호, 불이익조치금지,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신고자보호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손실을 방지,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2억원 이내) 또는 보상금(30억원 이내) 지급
- ❖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징역(1년 ~ 3년 이하) 또는 벌금(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부과



농협인 준수 Tip

- ✓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방지 담당관(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비밀누설, 불이익 조치 등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

IV

상황별 법률 준수 포인트

IV | 상황별 법률 준수 포인트

1 (음식물)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제공 기준

- ▶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 * 개인비용, 법인비용 모두 해당
 - (예외)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부조 목적의 3만원 이하 음식물 허용
 - (예외)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등에서 통상적 범위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예외)관혼상제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사회 상규로 인정

2 (선물) 공직자등에게 선물 제공 기준

- ▶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명목 등도 불문)
 - * 개인비용, 법인비용 모두 해당
 - (예외)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 허용
 - * 구매 영수증 등을 가액 증빙자료로 보관
 - * 음식물(식사)과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5만원 이하 가능

3 (경조사비) 공직자등에게 경조사비 제공 기준

- »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 * 개인비용, 법인비용 모두 해당
- (예외) 부조 목적의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 * 공직자등이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인 경우 제한 없이 제공 가능
 - * 경조금과 화환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가액을 합산하여 10만원 이내 가능
 - * 승진, 영전 등은 경조사가 아니므로 축하 난 제공 시 사고·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에서 가능

4 (골프) 공직자등에게 골프 접대 제공 기준

- »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등에게 골프 접대 불가
- » 농협 소유 회원권을 이용한 골프장 예약 제공도 불가
 - * 계열사, 농·축협 소유 회원권을 중앙회 임직원이 이용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

5 (공직자등 방문 시) 음료수 등 제공

- »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처 등으로 공직자를 방문할 경우 가벼운 음료수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의 5만원 이내 허용되는 선물로 제공 가능

6 (숙박 등 편의제공) 농협 소유 콘도 편의제공 가능 여부

- » 법인 소유의 콘도 무상사용 혜택 등 제공 금지
 - *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등에는 자기 소유·타인 소유를 구분하지 않음
 - » 무상사용 등을 약속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
- ### 7 (마케팅) 우수고객 사은품 제공 가능 여부
- » 금융, 유통 등 우수고객 사은품 제공시 공직자등이 대상자에 포함 된 경우는 제공 가능 (고객 입장에서 제공 받는 경우 가능)
 - *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된 고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8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 식사, 선물 등 제공 가능 여부

- » 상대방이 공직자에 해당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100만원 이하 금품등 제공은 제재 대상이 아님
 - * 지인이 공무원이지만 농협의 직무와 무관한 부처의 공무원인 경우 등

9 (인사청탁) 부정청탁 해당 여부

- ▶ 인사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어 제재 가능
 - * 농협중앙회 임직원 A ⇒ 농협중앙회 임직원 B ⇒ 농협중앙회 인사권자 C 또는 담당 직원 D
 - : A, B, C 또는 D 모두 제재 대상
- 인사권자(C) 또는 인사업무 담당자(D)는 인사 관련 부정 청탁을받고 그대로 업무 수행 시 형사 처벌 가능
- 제3자를 위해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인사 관련 부정 청탁을 한 자(B)는 과태료 부과 가능 (3천만원 이하)
- 제3자를 통해 인사 청탁을 한 자(A)는 과태료 부과 가능 (1천만원 이하)

10 (언론사) 기사 삭제, 수정 요청 가능 여부

-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정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 단,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이 될 수 있음
 - *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증재죄로 처벌한 판례도 있어 타법령 위반 소지도 있음

11 (국회의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 ▶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 예외사유 이외의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해당
- ▶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 예외로 규정 ⇒ 국회의원을 통한 법령 개정, 정책 개선 등 요청 가능
- ▶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 제공 가능

12 (협찬)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또는 제공 가능 여부

- ▶ 직무관련자에게 농협중앙회에서 주체하는 행사에 경품 협찬 요구 불가
 - * 금지된 금품등을 받는 것 뿐 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 ▶ 농민단체에 협찬을 하는 경우는 본 법 적용대상 아님
 - * 한농연, 전농연 등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 ▶ 언론사에서 협찬을 요구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위반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공직자등이 주체하는 행사에 경품 협찬 요구 행위도 제재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 정식 광고영업이 아닌 경우 위반으로 해석 가능

13 (행사) 업무 상 행사 등 참석 시 금품등을 받는 기준

- » 직무 관련자가 주관하는 행사, 연수 등에 참석하여 금품 등을 받는 경우 제재 대상

- (예외)행사의 목적이 직무와 관련된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가능

- * 행사 진행에 필수적인 식사, 숙박, 교통 등이 해당(선물은 불가)
- * 행사 목적에 관계없는 골프, 여행 등은 제재 대상

14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 및 신고의무

- »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 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강연, 기고 등 해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공직유관단체)〉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	30	20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를 넘지 못함(예: 임원 3시간 강의 시 상한액은 45만원)

- » 외부강의등 참석 시 사전 신고(부득이한 경우 종료 후 2일 이내)
- » 초과 수령 시 신고 및 반환(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15 (공직자등이 아닌 자 - 일반기업 등) 금품 등 제공

- » 일반기업은 공무와 관련이 없는 한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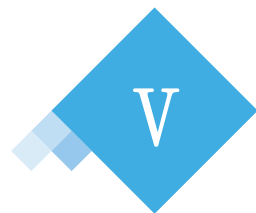
16 (공무수행사인) 농·축협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경우

- » 법령에 따라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농·축협 해당 가능

* 해당 농·축협 임직원 전체가 아닌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상이 되는 공무의 범위 내에서만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받는 경우 제재

- » 정부관리양곡수매, 과일 채소 수급조절 업무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임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제8조)이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등의 경우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만 금지됨



농협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30문 30답



1.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Q 01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을 받거나 주는 경우 무조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가액 기준 이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소액이라도 「형법」 상 뇌물죄, 배임수증재죄 등도 성립 가능
- 특히, 정부기관, 언론사, 국회 등에 제공 시 목적상 제한 기준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

Q 02

함께 식사(식사비 제공)를 하고, 선물, 경조사비 등을 주는 경우 가능한 금액 범위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을 함께 주는 경우 그 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그 가운데 가액 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부문의 상한액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단,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각 각의 상한액을 지키면서 합산 상한액도 지켜야함)

- 식사를 하고 선물을 받았다면 식사와 선물 가격을 합한 금액이 5만원을 넘어선 안 됨

예) 식사 2만원, 선물 3만원 - 가능

식사 4만원, 선물 1만원 - 불가

- 식사를 하고, 경조사비를 받았다면 합한 금액이 1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됨

예) 식사 3만원, 경조사비 7만원 - 가능

식사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 불가

Q 03

식사 제공 시 제공자가 함께 하기 곤란하여 식사 비용을 금전 또는 법인카드로 주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예외사유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에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들이 함께하는 식사' 등으로 정의(시행령 별표1)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자가 함께하지 않고 비용을 금전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 04

언론사 기사들에게 5만원 이상의 기업 홍보물을 선물해도 되나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되지 않음

→ 그러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가격의 기념품 등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특히 기념품 등 제작 시 제공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어야 함

Q 05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괜찮나요?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로 하고 있고, 이 경우 상급자와 하급자는 동일 기관 소속일 경우를 의미하므로 만일 농협중앙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라면 제재 대상이 아님

→ 만일 중앙부처 국장이 농협중앙회 과장에게 제공한 경우는 직급의 상하관계 만으로는 예외적용 안됨

Q 06

상호금융 고객 예금주(우수고객)에게 1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는데 대상 예금주 명단에 우연히 공무원이 포함된 경우 제공하면 안 되나요?



금품등 수수의 예외사유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 있고,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해 할인받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해석(국민권익위원회)

→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확일적·일률적으로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 사회상규에 따른 예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우수고객 선정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확일적·일률적 제공에 대한 입증 자료 필요)

Q 07

공식적인 행사에서 골프, 여행을 제공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받는 식사, 숙박, 교통 등은 허용되나 행사의 목적, 내용과 무관한 골프, 여행,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은 제재 대상임

Q 09

관혼상제에 손님으로 온 공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인가요?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 있고, 관혼상제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회상규로 인정하고 있음(국민권익위원회 해석)

Q 08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행사를 개최하는데 참석자가 소수여서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참석을 요청한 경우, 그 행사에서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는 부분도 예외사유 적용이 가능한가요?



금품등 수수의 예외사유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 제공하는 금품등'에서 "공식적인 행사"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 발송, 공식적인 초청장 등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소수로(폐쇄적) 진행되는 행사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예외사유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있음

2. 예외적 허용가액 이내로 제공

Q 10

감사 담당 공무원에게 농협중앙회 피감 사무소에서 감사 기간 중에 저녁식사를 제공했는데 3만원 이내라면 괜찮나요?



감사 담당 공무원에게 피감 사무소에서 감사 기간 중에 식사(금품등)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의 목적'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3만원 가액범위 이내라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인들이 볼 때 '제공받는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안전함

Q 11

농협 홍보담당 부장 A는 업무상 알고 지내는 B기자의 부친상에 부조금으로 10만원을 냈는데, 사무소에서 A부장 이름으로 준비한 5만원 상당의 조화를 별도로 보낸 경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나, 부조금과 조화 등의 선물을 함께 제공하
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여야함
A부장은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제공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임

Q 12

농협 00사무소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과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3명의 직원들이 순서대로 각각 3만원 상당의 식사, 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되나요?



직원 A가 식사를 대접하고, 직원 B가 술을 사고, 직원 C도 2차로 술을 산 경우

⇒ 먼저, 모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출처(법인)가 동일함에 따라 '동일인'이 '1회' 총 9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가능하여 제재 대상

⇒ 모두 개인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접대하는 목적이 동일하므로 세 명의 직원들이 계획 하에 순서대로 제공한 경우는 1회로 보아 제공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이 중론이며, 한 사무소의 직원들이 같은 날 순차적으로 동일한 공무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경우는 우연임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임

3. 금지된 금품등 신고

Q 13

금품등을 제공하였는데 받는 사람이 신고 또는 반환한 경우 제공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금품등을 제공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또는 금품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함

Q 14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고 돌려주기가 미안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관련 업무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관계가 나빠지자 마음이 불편해 보관했던 선물을 돌려주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 반환 또는 신고가 지연된 합리적인 증명 없이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움

4. 부정청탁 해당 여부

Q 15

국회의원에게 농협 고충사항 해결을 위해 법안 개정을 요청하면서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추가적인 선물을 제공한 경우 제재대상인가요?



국회의원에게 법안 개정을 요청한 경우는 부정청탁 예외 사유가 적용되어 제재 대상이 아니나, 그 과정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것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위법행위에 해당됨

Q 16

시민단체를 통해 농협 고충사항 관련 제도개선 요청등을 전달할 경우 시민단체 회원 중 누구를 통해서 하더라도 상관없나요?



시민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 소속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시민단체가 전달했다고 보기 어려움

5. 금품등 가액 산정 기준

Q 17

음식물 3만원에 음료 등 주류 값도 포함되나요?



술, 음료수 비용도 포함됨

Q 18

금품등 가격 산정 시 부가세는 포함하나요?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정함 (※ 택배비 등 발송비는 미포함)

6. 직무관련성

Q 19

농협 홍보 담당자인데 언론사 연예부, 사회부 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인가요?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은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 연예부나 사회부 기자도 관련 보도가 가능하고, 농협 관련 부문 기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향후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례 등을 통한 구체적인 평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

Q 20

정부 예산편성, 평가, 감사 등을 하는 공직자에게 해당 기간 중에 가액 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 사비를 줄 수 있나요?



해당 기간중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 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음

Q 21

농협중앙회 내부 직원들끼리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제재 대상인가요?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 금품등을 받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되므로 농협중앙회 내부 직원들끼리 주고 받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 됨

- 직무와 관련하여 주고 받는 것이 금지 대상이므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하나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내부 직원들끼리도 3만원 이내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평가, 인사 등 청탁의 개연성이 있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상대 임직원으로부터는 제공받지 않도록 해야함

7. 공직자들의 적용범위

Q 22

농협중앙회 직원 중 계약직도 공직자등에 해당되 나요?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범위를 해석할 때 임원(이사·감사)은 상임·비상임을 포함하고,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 직무를 불문하고 그 직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계약직 직원도 해당됨

Q 23

조합장이 중앙회 임원인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되 는데, 당해 조합장이 조합장의 신분으로 행한 일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 를 받게 되는지?



농협중앙회 이사인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임원으로서가 아닌 농·축협 조합장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부정청탁을 받거나 1백만원 이하 금품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아님 (100만원 초과 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국민권익위)

- 다만, 위반이 발생한 업무가 공무원행사인 관련 '공무 수행'에 해당되고, 조합장이 그 위반사실을 알면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라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받는 경우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또한, 사례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죄), 내부 규정·행동 강령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이 가능함

Q 24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일반 공직자들과 똑같이 법 적용을 받나요?



법 제11조에 의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자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게 됨

Q 25

공무수행사인인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Q 26

농협 홍보담당자가 언론사 직원이나 기자가 아닌 행정직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제한이 있나요?



언론사의 경우 보도·논평·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농협 홍보 담당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언론사의 행정직 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법 적용 대상임

8. 제재기준 등

Q 27

상대방이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인데 각 각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더치페이 한 경우 문제가 없나요?



더치페이하면 문제 없음 ('청탁금지법'은 "더치페이법"이라 할 수 있음)

Q 28

VIP고객에게 선물을 제공하는데 그 고객이 공무원임을 알지 못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도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제재가 어려울 것이나 그러한 사실의 입증에 어려울 수 있음
-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공무원이면 100만원을 초과 하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

Q 29

농협 직무와 관련된 지자체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배우자도 처벌받나요?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이를 알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을 처벌하게 되고, 배우자에 대한 제재사항은 없음

Q 30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내부 징계는 받지 않나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 내부 징계도 받게 됨

※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 (제21조)

- 임직원행동강령에서도 청탁,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제재가 없어도 강령 위반에 따른 내부 징계는 받을 수 있음



부 록

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02

부정청탁 체크리스트

03

수수 금지 금품등 체크리스트

부록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행·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

- 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 조세 · 부담금 · 과태료 · 과징금 · 이행강제금 · 벌칙금 ·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 · 승진 · 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 · 의결 · 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 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 포상 ·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 · 경매 · 개발 · 시험 · 특허 · 군사 ·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 장려금 · 출연금 · 출자금 · 기부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에 배정 지원하거나 투자 · 예치 · 대여 · 출연 ·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 ·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 교환 · 사용 · 수익 ·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 부대 배속 ·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이 선정 · 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 · 재판 · 심판 · 결정 · 조정 · 중재 ·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들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자위 ·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 기준(제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 · 사규 ·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 ·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 기준의 제정 · 개정 · 폐지를 제안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 정당 ·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 기준의 제정 · 개정 · 폐지 또는 정책 · 사업 ·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 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 · 요구하거나 그 진행 · 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 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 · 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 제도 ·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들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들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들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의 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외레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간·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가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원 상·하·평·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원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들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들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익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

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

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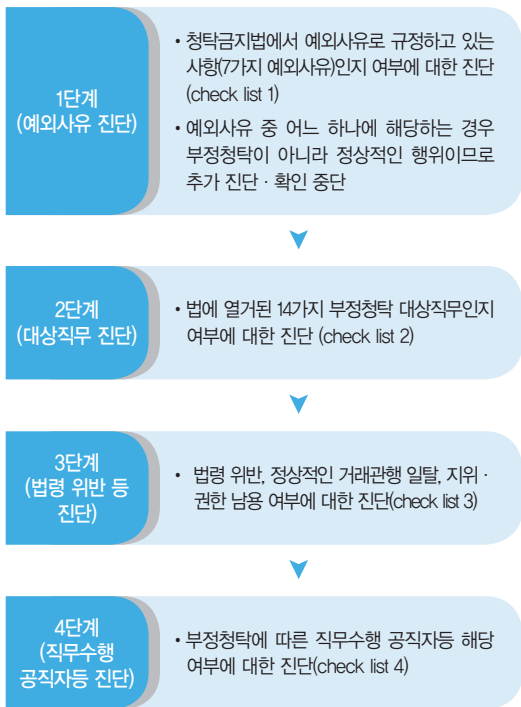
제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록 2

부정청탁 체크리스트

1 부정청탁 확인 절차도



※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Check List 2~4까지 진단 과정을 거쳐 모두 체크(✓)되어야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2 부정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1~4



Check List 1

❖ ‘Check List 1’ 1부정청탁 예외사유 중에서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음

체크	체크 항목
☐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 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 · 사규 · 기준을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 ·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 기준의 제정 · 개정 · 폐지를 제안 ·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 기준의 제정 · 개정 · 폐지 또는 정책 · 사업 ·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 건의하는 행위
☐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 문의 등을 하는 행위
☐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 · 요구하는 행위
☐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 제도 ·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위의 항목에서 체크(✓)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Check List 2~4의 항목을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고, 체크(✓)가 없는 경우 Check List 2를 진행 (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애매한 경우 다음 단계 진행 또는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Check List 2

- ❖ “Check List 2”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중에서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Check List 3의 항목을 진행

체크	체크 항목
☐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직무
☐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 직무
☐	•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관련 직무
☐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직무
☐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
☐	•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관련 직무
☐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 지원 등 관련 직무
☐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 등 관련 직무
☐	• 각종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직무
☐	•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직무
☐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직무
☐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Check List 3~4의 항목을 진행하지 않고 종료



Check List 3

- ❖ “Check List 3” 법령 위반, 정상적인 거래관행 이탈, 지위 권한의 남용 중에서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Check List 4의 항목을 진행

	체크	체크 항목
법령	☐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률
	☐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대통령령
	☐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국무총리령, 부령
	☐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시·훈령 등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 일반법령 또는 각종 소송법, 심판법,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법
	☐	• 조례·규칙(「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제정한 규칙)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정상적인 거래관행 이탈	☐	•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	•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지위권한 남용	☐	•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행위의 의도·목적,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재화 및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 조건
	☐	•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난 행사
	☐	•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량의 행사

-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Check List 4의 항목을 진행하지 않고 종료



Check List 4

❖ ‘Check List 4’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중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크(✓)

체크	체크 항목
☐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의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상급 공직자등
☐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의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상급 공직자등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진단 완료



Check

- ◆ check list 1에서 체크(✓)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님
- ◆ check list 2, check list 3, check list 4에서 모두 체크(✓)가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정청탁이 성립

부록 3

수수 금지 금품등 체크리스트

1 수수 금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확인 절차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Check List 2~4까지 진단 과정을 거쳐 모두 체크(✓)되어야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 ✓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때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 ✓ 받을 수 있는 금품등인지 여부는 위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2 수수 금지 금품등 자가 진단 Check List



Check List 1 (가액기준 초과 허용되는 금품등 자가진단)

- ❖ 제공자가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 인지 여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공직자가 법령 · 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
☐	• 공직자가 관례상 ·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자의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 공직자가 법령 · 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제공자가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수수가 허용됨(종료)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2를 진행



Check List 2 (가액 제한없이 허용되는 금품등 자가진단)

- ❖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제한 없이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므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
☐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 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움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천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
☐	•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음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가액의 제한 없이 수수 가능

※ 다만, 세 번째 항목(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기준 이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체크(✓)한 경우에는 check list 3을 진행



Check List 3

(가액기준 이하라도 제한되는 금품등 자가진단)

❖ 금품등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 과정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우
☐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우
☐	•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직접적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우
☐	•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우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우
☐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경우
☐	• 그 밖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우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가액기준 이하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 수수할 수 없음

농협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준수 가이드북

- 발행처 :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 발행일 : 2016년 9월
- 연락처 : TEL. 02-2080-5508

* 이 책은 농협 임직원의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외부로 유통되거나 판매 될 수 없습니다.



 NH농협